

# 계룡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증정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제 120 호             |
| 의결년월일 | 2004. 1. .<br>(제 회) |

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
| 제출일자 | 2004. 1. . |
| 제출자  | 계 룡 시 장    |

## 1. 개정이유

-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929호(2003. 7. 18공포)에 의거 종전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폐지되고 새로이 계룡시가 설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여 시행 운영하고 있으나
- 계룡시 개청과 함께 우리시만의 독특한 문화축제인 군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이에 필요한 인력과
-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필요인원 확보
-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진사 1명(기능직)을 증원하고자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상향조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221명에서 235명으로
- 집행기관의 정원을 211명에서 224명으로 하고,
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하고자 함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
  - 지방자치법 제15조(조례)
 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(정원의 규정)
- 참고자료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221인” 을 “235인” 으로, 같은조 제1호중 “211” 명을 “224” 명으로 하며, 같은조 제2호중 “10명” 을 “11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련 법 령(발 취)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

제21조 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 참 고 자 료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<br/>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21</u>인으로<br/>하고, 이를 다음 각호와 구분한다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211</u>명<br/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10</u>명</p> 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지방<br/>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235</u>인으로<br/>하고, 이를 다음 각호와 구분한다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224</u>명<br/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11</u>명</p> |